

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2004년 12월 29일(충청북도교육감)
- 나. 회부일자 : 2004년 12월 30일
- 다. 상정일자 : 2005년 1월 13일(제1차 교육사회위원회)

2. 제안설명 요지(기획관리국장 전찬구)

가. 제안이유

- 2005학년도 병설유치원 및 초·중학교 신설과, 학생수 감소로 인한 병설유치원 및 초등학교분교장 폐지에 따라 「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」를 개정하려는 것임

나. 주요골자

- 병설유치원 3개원(사천초, 죽림초, 내토초) 및 초등학교 2개교(사천초, 죽림초), 중학교 1개교(금천중)를 신설하고,
- 소규모학교 통·폐합에 따라 분교장 1개교(장연초 광진분교장), 분교병설유치원 1개원(장연초 광진분교장)을 폐지하는 것임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지용옥)

- 금번 제출된 「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,
 - 학생수용계획 및 학교신설계획, 그리고 학생수 감소에 따른 초·중·유치원의 신설 또는 폐지를 위하여, 「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」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됨

- 다만,
 - 학교신설 및 폐지 기준과 절차,
 - 폐교되는 학교의 잔류학생에 대한 학업지속대책,
 - 시설상태 및 입지여건, 현지주민과 동문 등의 소망과 여론을 감안한 폐교 건물 및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첨부서류

-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

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의 청주동중학교란 다음에 금천중학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금천중학교	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326번지
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

별표 4의 새터초등학교란 다음에 사천초등학교란을, 개신초등학교란 다음에 죽림초등학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장연초등학교광진분교장을 삭제한다.

사천초등학교	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26-1번지
죽림초등학교	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죽림동 293번지

별표 6의 새터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사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을, 개신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죽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을, 신백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 다음에 내토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장연초등학교광진분교장 병설유치원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사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	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	사천동 26-1번지
죽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	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	죽림동 293번지
내토초등학교병설유치원	충청북도 제천시 신백동	132번지

신·구조문 대비표

【 별표 3 】

중 학 교

현 행		개 정 안	
명 칭	위 치	명 칭	위 치
청주동중학교	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47-5번지
<신>	살>	금천중학교	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326번지

※ 대비표에는 변경되는 사항만 명시함.

【 별표 4 】

초 등 학 교

※ 대비표에는 변경되는 사항만 명시함.

【 별표 6 】

유 치 원

현 행		개 정 안	
명 칭	위 치	명 칭	위 치
새터초등학교 병설유치원	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200번지
<신	실>	사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	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261번지
개신초등학교 병설유치원	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637번지
<신	실>	죽림초등학교 병설유치원	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죽림동 298번지
신백초등학교 병설유치원	충청북도 제천시 신백동 212-7
<신	실>	내토초등학교 병설유치원	충청북도 제천시 신백동 132번지
장연초등학교 광진분교 병설유치원	충청북도 괴산군 장연면 광진리8141번지	<삭	제>

현 행		개 정 안	
명 칭	위 치	명 칭	위 치
새터초등학교	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200번지
<신	살>	사천초등학교	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261번지
개신초등학교	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637번지
<신	살>	죽림초등학교	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죽림동 293번지
장연초등학교 광진분교장	충청북도 괴산군 장연면 광진리 814-1번지	<삭	계>

※ 대비표에는 변경되는 사항만 명시함.

관계법령 발췌서

□ 교육기본법

제11조(학교 등의 설립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을 설립·경영한다.

□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

제34조(교육기관의 설치) ①교육감은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당해 시·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.